

식품안전 e-도움지

Vol. 28. 2026. 6

e-Information on Food Safety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목 차

▶ 2026 상반기 정보마당

달라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1.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3
2.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추진.....5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6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8
5.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행정예고.....9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

1.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10
2.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 등 발간12
3. '26년 식중독 예방 본격 추진13
4. 24시간 AI 식품 민원 상담시스템 '온고지신' 운영 시작.....14
5. 식품 수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한번에 검색.....15

2026 시험·검사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계획.....16

▶ 2026 상반기 식품위생법 등 개정 사항

-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17
- ◆ 행정규칙 개정 사항 21



2026 상반기 달라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1.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1) 더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환경 조성

- ① AI 기반 안전 혁신으로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 ② 제조부터 소비까지 스마트 안전망 구축
- ③ 담배 유해성분 정보공개로 국민 알권리와 건강 보호
- ④ 디지털 환경의 식의약 불법광고 위험 차단 및 관리 강화
- ⑤ 실시간 AI 감시 등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신속 차단
- ⑥ 일반식품과 의약품-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 오인·혼동 해소

2)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 ① 위생·영양 관리 지원 확충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
- ②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는 스마트 식품 정보
- ③ 원인조사부터 대응까지 식중독 대응 시스템 혁신
- ④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제 안정공급 기반 확대
- ⑤ 국가 주도의 필수 의료제품 공급 확대와 자급화 지원
- ⑥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료제품의 공급 안정 지원체계 구축
- ⑦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식·의약 정책
- ⑧ 청년과 함께하는 식의약 정책 소통 강화

3)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

- ① 현장에 속도를 더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
- ② 위해도 기반의 규제 합리화
- ③ AI 활용 의료제품 개발 확대 기반 마련
- ④ 디지털의료제품의 맞춤 허가 체계 설계와 지원
- ⑤ K-푸드 해외 규제·인증 정보제공과 협력 강화

2026 상반기 달라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202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

Ⅲ. 2026년 중점 추진과제

□ 추진 방향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

안심을 주는 규제 기본이 단단한 국민 안전

- ① 더 세심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환경 조성
- ② 소비자 혼동 예방을 위한 불법광고 규제 및 제품 표시 명확화
- ③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 감시·재활·예방

손 내미는 규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심 일상

- ④ 누구나 누리는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생활
- ⑤ 의료제품 안정공급으로 환자치료 기회 보장 확대
- ⑥ 현장 수요와 식의약 정책을 잇는 '정책이음+' 프로젝트 추진

끌어주는 규제 혁신과 함께하는 성장 견인

- ⑦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제품 허가규제
- ⑧ AI·디지털 기반 신기술 의료제품 규제지원
- ⑨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

2026 상반기 달라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2.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1) 배경

- ①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5. 12. 30., 시행 '26. 12. 31.)

2) 주요내용

① 현재 규정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함

② 개정안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함

* 식품유형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인 식품

**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등

③ 시행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6 상반기 달라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2.13.~4.14.)

1) 주요내용

① 감미료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및 사용량 설정

- **수크랄로스**는 과자에 대한 사용량을 강화(1.8g/kg 이하→1.6g/kg 이하)하고,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58g/kg으로 정하고, **아세설팜칼륨**은 빙과·아이스크림의 사용량을 강화(1.0g/kg 이하→0.8g/kg 이하)하고, 빵류·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의 사용량을 0.35g/kg 이하로 정함

- **아스파탐, 스테비올배당체,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사용대상식품을 각각 빵류·추잉껌 등 37개, 과자 등 35개,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유형별 사용량을 0.03~12.0g/kg으로 설정

② 영양강화제 신규 지정 등 사용기준 완화

-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은 영양강화제 용도로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

- **불화나트륨**은 현재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암·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어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

- 벌꿀을 사용해 제조하는 주류의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생육 방지 등을 위해 사용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을 현행 0.030g/kg에서 국제기준과 같은 **0.20g/kg 미만으로 완화**

③ 오용 우려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

- 수면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이 있어 오용 우려가 제기된 **가바, 감마부티로락톤**은 식품의 **착향목적에 한해 사용하도록 사용량을 제한***하고, **매스틱**은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천연향료의 기원물질에서 삭제**

* (현행) 착향목적 기술적 필요량 → (개정) 착향목적 한해 기바 500mg/kg, 감마부티로락톤 10mg/kg 이하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6 상반기 달라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2.13.~4.14.)

붙임 1 감미료 사용기준 정비(안) 주요내용

품목명	현행	개정(안)
수크랄로스	- 과자(1.8g/kg) 등 9개 식품: 0.32 ~ 12g/kg -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0.58g/kg	- 과자(1.6g/kg) 그 외 식품 동일 - 캔디류 등 21개 식품: 0.58g/kg 이하
아세설팜칼륨	- 빙과-아이스크림(1.0g/kg) 등 9개 식품: 0.45 ~ 15g/kg -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0.35g/kg 이하	- 빙과-아이스크림(0.8g/kg) 그 외 식품 동일 - 빵류, 떡류 등 16개 식품: 0.35g/kg 이하
아스파탐	- 빵류 등 5개 식품: 0.8 ~ 5.5g/kg - 상기 식품을 제외한 식품: 기술적 필요량	- 빵류, 추잉껌 등 37개 식품: 0.35 ~ 12.0g/kg 이하 * 건강기능식품, 설탕대체식품: 기술적 필요량
스테비올배당체	모든 식품(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 제외): 기술적 필요량	- 과자, 캔디류 등 35개 식품: 0.15 ~ 4.5g/kg 이하 * 건강기능식품, 설탕대체식품: 기술적 필요량
효소처리스테비아	모든 식품(설탕, 포도당, 물엿, 벌꿀류 제외): 기술적 필요량	- 과자, 캔디류 등 44개 식품: 0.03 ~ 5.0g/kg 이하 * 건강기능식품, 설탕대체식품: 기술적 필요량
에리스리톨	모든 식품: 기술적 필요량	음료류: 16g/kg 이하, 그 외 식품: 기술적 필요량
당알코올류	-	- 당알코올류는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 에리스리톨,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액, D-소비톨, D-소비톨액,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2026 상반기 달라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4.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26.1.8.~3.9.)

1) 배경

- ① 탈(脫)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를 식품용기에 쓸 수 있도록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영·유아가 고무제 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영·유아용 고무제의 규격을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 기준(투입원료, 재생공정) 신설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에 이어 물리적 재생처리한 폴리프로필렌(PP)도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인정기준을 신설

* '22년 물리적으로 재생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를 재생원료로 인정

-투입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인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한 것, 몸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재생공정 중에는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하여 관리,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의 위생·품질 관리사항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② 영·유아용 고무제 규격 강화(총휘발량·니트로사민류 등 추가, 총용출량·아연 규격 강화) 등

-영·유아가 사용하는 고무제 기구 등은 고무젓꼭지와 함께 '영·유아용 고무제'로 분류하고 고무젓꼭지와 같은 수준으로 규격을 강화

* [항목 추가] (현행) 총 9개 항목

→ (개선) 현행 + 총휘발량, 니트로사민류,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추가

* [기준치 강화] (현행) 납, 100 mg/L, 카드뮴 100 mg/L, 총용출량 60mg/L, 아연 15mg/L

→ (개선) 납, 10mg/L, 카드뮴 10mg/L, 총용출량 40mg/L, 아연 1mg/L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6 상반기 달라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

5.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행정예고 ('26.6.1.~7.31.)

1) 개정이유

- ① 「위생용품 관리법」 제1조, 제2조 및 제10조에 따라 안전관리 범위에 해당하는 '문신용 염료'의 '제5. 위생용품 시험법', '42. 문신용 염료에 함량을 제한하는 성분(유해원소)' 기존 시험법에 시험용액의 조제 방법 일부 신설
- ② 검사 장비의 부식 예방을 위한 소모품 없이 검사할 수 있게 봉산 시약을 이용한 시험법을 추가하는 기준·규격 정비

2) 주요내용

- ① 문신용 염료에 함량을 제한하는 성분(유해원소) 개정 [안 제5. 42. 2) 시약 및 시액]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5. 42. 2) 시약 및 시액에 '(6) 봉산(99.999% 이상 또는 시험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등한 등급의 봉산)' 추가
- ② 문신용 염료에 함량을 제한하는 성분(유해원소) 개정 [안 제5. 42. 4). (1) 마이크로파 분해 방법]
-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중 제5. 42. 4). '(1) 마이크로파 분해 방법'에 '희석시킨 봉산(5 → 100) 20 mL을 넣어 불소를 불활성화시키는 시험법' 추가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2026 상반기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

1.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1) AI 수입식품 검사관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에 정밀검사 집중

- ① 'AI 수입식품 검사관(AI 위험예측 시스템)'으로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핀셋 검사함
AI 위험예측 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정보', '해외 위해정보' 등을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 지능(AI)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



2) AI 이물조사관으로 이물 검출 정확도 향상

- ① 소, 돼지고기 등 가축의 사육과 식육의 생산, 가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삿바늘, 화농(고름), 플라스틱 등의 이물 잔류·혼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는 식육 이물 검출기(AI 이물조사관)**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2026 상반기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

1.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민 먹거리 안심 환경 조성

3) AI 식품위해예측관으로 식품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예측 정보 제공

- ① AI 식품위해예측관은 기온, 습도 등 기후, 환경 정보와 그간 축적된 수거, 검사 등 안전관리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위해요소의 변화와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곰팡이독소인 아플라톡신*의 예측모델을 개발 함

*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옥수수, 땅콩 등 곡류, 견과류에서 발생하는 간암 유발 발암 물질(WHO IARC 1등급)

- ② 올해는 살모넬라 등 주요 위해요소 10종*에 대한 예측모델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위해예측 시스템을 본격 구축·활용

*살모넬라, 마비성 패독, 오크라톡신, 푸모니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데옥시니발레놀, 병원성 대장균, 비브리오 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 대장균군

<위해예측정보 활용 예시>

정부	산업체	전문가	국민	
☑ 식품안전관리 계획 수립 지원 ■ 위해예보 실시 (예측지도, 확산경로 제공 등) ■ 단계별 관리방안 마련	+	☑ 식품안전관련 연구 활용 ■ 예측 정확도, 환경요인 변화 등 제공받아 통합 분석 활용	+	☑ 위해경보에 따른 안전한 소비 ■ 위해발생 가능성 실시간 알림 수신 ■ 위해발생 정보별 식품 소비 선택

2026 상반기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

2.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등 발간

1)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

- ①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세척하여 대여하는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식판 중심 지침을 컵이나 배달용기 등 모든 식품용 다회용 기구·용기로 확대하여 업계가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② 이번 지침에는 다회용 기구·용기 기준, 재질별 적정한 세척·소독 관리 기준, 세척·소독적 정성 확인, 폐기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여 식품으로 이행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함

*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 식판, 컵, 배달용기 등의 다회용 기구·용기를 세척·소독하여 급식소, 접객업소 등에 대여하는 업체로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음

❖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안내서

2) 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정보집 발간

- ① 2022년부터 암, 고혈압, 폐질환, 간경변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표준제조기준을 마련해 왔으며, 염증성 장질환자용 식품 기준 신설도 추진하고 있음
- ② 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환자 상태와 제품 특성에 맞는 선택과 사용이 중요함에 따라, 이번 정보집은 이용자 전문지식과 활용 목적을 고려해 일반 소비자용과 전문가용으로 구분해 제작됨
- ③ 일반 소비자용 정보집에는 제품의 종류, 영양정보 및 표시사항 확인 방법, 보관·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경구섭취용과 경관급식용으로 나누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전문가용 정보집에는 제품 유형별 특성, 질환·임상 상황별 고려사항, 관련 규정과 기준 등을 수록했으며, 시중 제품의 영양성분과 용량 등 정보를 부록으로 제공 함

❖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전문홍보물 → '한국임상영양학회 누리집(p.korscn.or.kr) → 자료실

2026 상반기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

3. '26년 식중독 예방 본격 추진

1) AI 기반 식중독 안전관리 체계 구축

- ① AI 식중독 원인추정시스템을 도입해 그간 축적된 식중독 원인 분석 데이터를 AI가 학습·분석하여, 실제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원인균과 원인식품을 신속하게 추정하고 현장조사에 활용한다. 이로써 식중독 원인조사의 효율성과 원인규명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 ② 기존의 식중독 예측 지도 서비스에 AI 기술을 적용하여 국민에게 지역별 식중독 발생 뉴스, 식중독 예측 지수에 따른 행동요령과 주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2) 생산부터 소비까지 빈틈없는 식중독 관리

- ① 살모넬라 식중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유통·소비 단계 달걀의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살모넬라 식중독과 관련이 있는 달걀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확대하여 생산단계 관리를 강화하고, 달걀 공급업체, 음식점 등 달걀 취급 업체에서 수거검사를 추진
- ②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뿐 아니라 배추김치까지 검사를 확대*하고, 어린이집 등 영·유아시설의 환경검사(문고리, 완구, 수도꼭지 등을 2배 이상** 강화)
* ('25년) 지하수 700건 → ('26년) 지하수 420건, 배추김치 280건
** ('25년) 210개소 → ('26년) 500개소
- ③ 대규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축제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 개최 시 지자체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식약처는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배치·운영하는 한편 식중독 예방·홍보 활동에 긴밀히 협력

2026 상반기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

4. 24시간 AI 식품 민원 상담시스템 '온고지신' 운영 시작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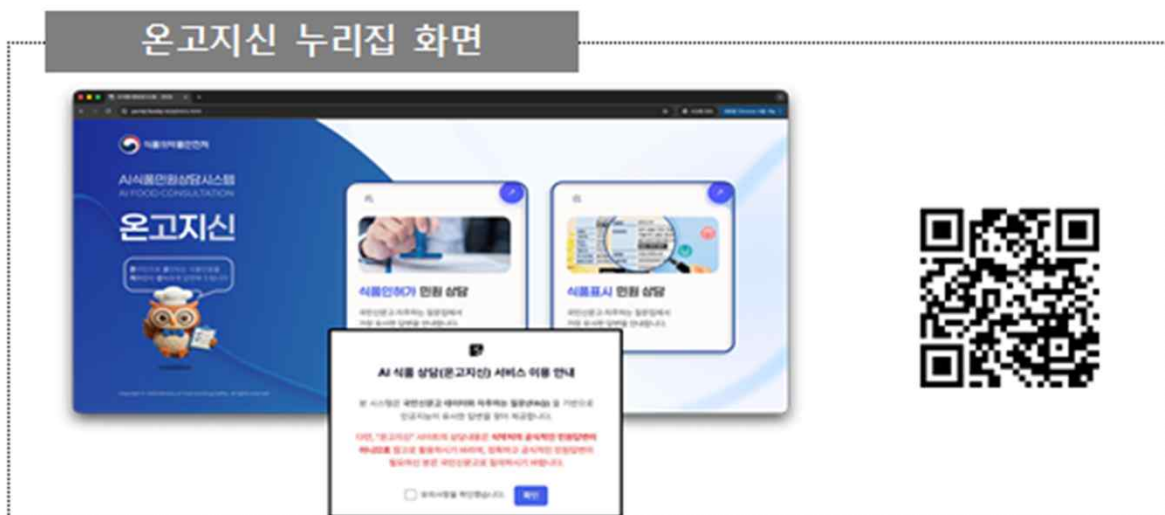
- ① 그간 식품 인허가 및 표시사항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자주 묻는 질문(FAQ)을 활용해 왔으나, 사례가 제한적이고 필요한 질문과 답변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현재 식품 질문(FAQ) 공개 현황(26.6.2기준) : 인·허가 546건, 표시 469건 수준

- ② 온라인 질의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FAQ와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답변을 자연어로 검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상담 시스템을 개발 함

2) 주요내용

- ① '온고지신'은 단순 키워드 검색 방식이 아니라 **질의의 의미를 분석해 유사한 과거 답변을 찾아주는 AI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며, 이에 민원인 등이 질문을 하면 질문 내용과의 유사도를 분석해 가장 적합한 **상위 3개의 답변을 실시간으로 제공**
- ② **신규 질의·답변 사례를 지속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여 다양한 민원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또한 '온고지신'이 식품 산업계의 규제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와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



❖ (접속방법) 푸드QR 누리집 > 산업체 탭 > '온고지신' 배너

2026 상반기 도움이 되는 식품 정보

5. 식품수출에 필요한 해외법령, 한번에 검색

1) 개요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0일(수)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함**.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여 앞으로는 국가별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음

2) 주요내용

- ① 2025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 Fooddb.mfds.go.kr)을 운영하고 있음. CES FoodDB에서는 미국·중국 등 주요 20개국과 라면·음료·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식품안전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26년까지 대상국을 30개국으로, 품목을 50개로 확대할 예정**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 내용]

- **대상국가**: 필리핀,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대만, 베트남, 한국, 일본, 러시아, 홍콩, 캐나다,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영국, 인도
- **대상품목**: 라면, 김, 비스킷/쿠키, 과실주스, 커피 **엑기스**, 김치, 만두(속을 채운 파스타), 인삼 음료, 찌거나 삶은 쌀, 고추장, 홍삼음료, **홍삼포**, **홍삼정**, 요구르트, **유산균**, 라면(건면), 냉면, 원두, **엑상커피**, 사골육수, 죽, 쿠키, 비스킷, 유자차, 유자청, 빙과, 아이스크림, 샤베트, 이온음료, 양조간장
- **제공내용**: 품목별 기준규격 및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절차** 및 **준비서류** 등

- ② 식약처의 CES Food DB와 58개국의 법령 원문 및 번역본 약 3만 건을 제공하고 있는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식품 수출기업이 **필요한 규제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음**

❖ 시스템 이용방법

-동영상: <https://youtu.be/Psm3mYYsDBM?si=1SGZcoLQHtbbYbxO>

-QR코드



2026 시험·검사 유관기관 협의회 계획

『경인지역 산·학·관 시험·검사 협의회』 식품분과 운영 계획

□ 추진배경

- 경인지역 내 산업계, 대학,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간 식품·의약품 관련 시험·검사 정보 공유, 소통 강화 및 협력체계 유지
 - ※ 대상: 식품분과 38개
- 식품 등 검사 관련 법령 등 최신동향 공유 및 정보 교류

□ '26년 추진 계획 일정

- '26년 「경인지역 산·학·관 시험·검사 협의회」 계획 수립(5월)
- 「경인지역 산·학·관 시험·검사 협의회」 식품분과 운영
 - 식품분과 논의 주제 및 안건 조사(5월) 후 안건 확정(10월)
 - 정기회의 개최 및 보도자료 배포(11월)

□ 기대효과

- 경인지역 내 산업계, 학계, 정부 기관 간 식품·의약품 관련 최신동향 및 분석 기술 공유로 소통·협력 및 산업 활성화 증진
- 일관성 있는 시험·검사와 능동적 대응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

➤ **주요 현안, 건의사항 등 안건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인지역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 담당자 신민수 032-450-3352 / sua134@korea.kr

2026 상반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표 지	법령명	시행일	주요 내용
1	식품위생법 [법률 제21299호, 2025. 12. 30., 일부 개정]	시행 2026. 12. 31.	유전자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며, 안전성 심사 결과 식용으로 승인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과 동일한 품종에 해당되나, 유전자변형이 이루어진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일부개 정]	시행 2026. 3. 1.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등을 이용하는 손님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음식판매 자동차를 사용한 음식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동형 음식판매 특수자동차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6 상반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연도	법령명	시행일	주요 내용
3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21301호, 2025. 12. 30., 일부 개정]	시행 2026. 12. 31.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허가받은 축산물 작업장의 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제조 시설에서 축산물을 가공·포장 또는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받는 도축업의 영업자에 대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의무를 면제하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축산물 관련 영업자에게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해 검사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검사명령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위해 평가'를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위해성평가'로 용어를 통일하려는 것임.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20825호, 2025. 3. 18., 일부개 정]	시행 2026. 1. 1.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위해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마약류에 해당하는 원료·성분이 포함되거나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함.

2026 상반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제호	법령명	시행일	주요 내용
5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07호, 2026. 5. 26., 일부 개정]	시행 2026. 11. 27.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약사·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식품 등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35699호, 2025. 8. 5., 일부개정]	시행 2026. 2. 6.	방송광고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하여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광고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정하여 해당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한 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026 상반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사항

연도	법령명	시행일	주요 내용
7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법률 제21141호, 2025. 11. 11., 일부 개정]	시행 2026. 1. 1.	현행법은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와 시험·검사인력으로 하여금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표자가 시험·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2026 상반기 행정규칙 개정 사항

연번	규칙명	시행일	주요 내용
1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32호, 2026. 4. 13., 일부개정]	2026. 4. 13.	가. 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안 제3.2.2-49 1), 2), 3) 및 4), 제4.3.3-82) 1) 키토올리고당 제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성 내용을 추가하여 고시 필요 2) 키토올리고당의 기능성 내용(식후 혈당상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조기준 및 시험법을 추가·신설하여 고시형 원료에 반영함 3) 고시형 원료의 기능성 내용 확대에 따른 제품 생산 활성화를 기대함 나. 개별성분별 시험법 개정(안 제4.2.2-1.4.2.6, 제4.3.3-6, 제4.3.3-8, 제4.3.3-12, 제4.3.3-13, 제4.3.3-32, 제4.3.3-57, 제4.3.3-58) 1) 시험 대상 명확화, 시료 채취량 확대, 정제방법 추가, 관련 규정의 개정 사항 반영 등 시험법 개선 필요 2) 봉해시험법, 비타민 B1, 나이아신, 비타민 B12, 비오틴, 지방산, 유산균수, 유산균·구균 및 비피더스균 시험법을 개선하고자 함 3) 시험법 개정으로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 가능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1호, 2026. 3. 16., 일부개정]	2026. 3. 16.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냉동식품 보조용으로 사용되어 함께 냉동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건조농산물도 냉동보관 할 수 있도록 개선 3) 제품 특성을 고려한 보존·유통기준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별표 4] 1) 「농약관리법」에 따른 등록(예정) 및 수입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및 사료, 토양, 용수 등을 통해 축산물에 비의도적으로 오염될 수 있는 농약 성분 관리 필요 2) 메타미트론 등 113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다.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안 제8.] 1) 시료 추출액 채취무게, 희석배수 추가 등 일산화탄소 시험법 개정 2) 기준·규격 개정 등에 따른 식품 중 잔류농약 시험법 신설·개정 3)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DAS-01131-3, DP-910521-2, NS-B50027-4)에 대한 시험법 신설

2026 상반기 행정규칙 개정 사항

연도	규칙명	시행일	주요 내용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40호, 2026. 5. 19., 일부개 정]	2026. 5. 19.	가.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식중독균 규격 개정[안 제5. 11. 11-3 5) (11), 제5. 11. 11-3 5) (13), 제5. 11. 11-3 5) (16)] 1) 식단형 식사관리식품의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한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규격 도입 나.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어획량 등 식용근거가 확인된 가시진흙새우(Argis Toy am aensis) 등 73종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2. 동물성 원료에 추가 2)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작두콩 씨앗·어린꼬투리, 유자 잎, 프로폴리스를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4) 겹삼잎국화, 흑산내 추출물, 풀무치, 땃두릅나무 추출물을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5) 전통발효식품 유래 미생물과 국제 공인기관에서 식용근거가 확인된 미생물을 [별표 1] 및 [별표 2] 원료 목록에 추가 (5건) 다.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 디메설파젯 등 12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라.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 3. 8) (1), 별표 5 중 (171) 페닐부타존] 1) 안전성 등의 문제로 국내 사용 허가를 취소한 페닐부타존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목록으로 추가하고, 현행 잔류허용기준을 삭제 마.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1) 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건조필름배지 조성을 삭제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건조필름배지를 사용하도록 개선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식용란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함에 따라 식용란 살모넬라 시험법에 반영 3) 총 아플라톡신, 벤조피렌 시험법, 루핀알칼로이드 시험법 개선 4) 식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의 용어 및 기술 방법 통일 5) 유전자변형식품 승인 품목(MON94313)에 대한 시험법 신설

2026 상반기 행정규칙 개정 사항

표시	규칙명	시행일	주요 내용
4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고 시 제2025-27호, 2025. 4. 21., 일부개 정]	2026. 1. 1.	가. 외국어로 인쇄된 수출용 식품에 대해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허용[안 표. 1. 너. 10)] 1) 식품의 표시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기·포장의 재질 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한하여 스티커, 라벨, 또는 꼬리표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수출 식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2) 수출 식품은 수출 계약이 변경되거나 파기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외국어로만 인쇄된 용기·포장에 스티커 등으로 한글표시사항을 표시할 수 없으므로, 국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식품임에도 제품을 폐기하는 등의 영업자 피해 발생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사항 반영 및 자구 수정 (안 표. 1. 가. 2), 나. 2), 라. 2), 사. 2), 자. 2), 타. 2), 파. 1)·2), 하. 2), 거. 2), 너. 2), 더. 2), 러. 2), 머. 2), 버. 2), 서. 2), 어. 2), 저. 2) 및 처. 2)) 1) 영양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2004호, 2024. 12. 3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 식품유형별로 반영하여 조문 정비 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규정 정비(안 표. 1. 사., 표. 1. 라. 2) 거), 사. 2) 거), 너. 2) 거), 버. 1), 버. 2) 거), 처. 2) 하), [표 4], [표 5])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미감의 유형 명칭 및 식품첨가물 명칭 정비 2) 전분류 중 ‘전분가공품’의 경우 제품명에 ‘전분’ 의무 표시를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항으로 ‘전분가공품’에는 식품유형의 명칭인 ‘전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규정 간 충돌로 인한 영업자의 혼선이 발생하므로 규정 정비로 영업자 혼선 방지 라. 자연산물과 가공식품이 함께 구성된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서식도안 마련(안 『별지 1』1. 아. 2)·4), [도 3] 1. 사.) 1)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간편조리세트(밀키트)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 필요성 지속 제기 2) 조리되지 않고 손질된 자연산물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영양표시 도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및 선택권 보장

2026 상반기 행정규칙 개정 사항

연도	규칙명	시행일	주요 내용
5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4호, 2026. 3. 27., 일부개정]	2026. 3. 27.	가. 용어의 풀이 신설 및 조문체계 개선 1) 기구 및 용기·포장 관련 업계 및 검사기관 등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코자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의 풀이 추가 및 조문의 체계를 개선(I. ~ VII.) 나. 기준·규격 적용 규정 정비 1) 공통제조기준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사용금지, 용도별 규격의 랩 중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DEHA) 사용금지 규정과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의 용출규격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용출규격 정비(V. 1. 1-8. 가. 3)) 다.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및 정비 1)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식품 외 다른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PP)를 투입원료로 사용하도록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IV. 및 [별표4])

식품안전 e-도움지

Vol. 29. 2026. 6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발행일 2026. 6. 29

담당부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식품기준분석과

연락처 Tel: 032-450-3322, Fax: 032-442-4622



[공직자 부조리 및 공익신고안내]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보호됩니다.

- ▶ 부조리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 코너
- ▶ 공익 신고 : 식약처 홈페이지 "국민소통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 상담" 코너